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주소: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
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-741



받는사람

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
빌 105동 1504호

김명호 님

156-030
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 서울중앙지방검찰청 / 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			
수신자	김명호	발신자	검사 신성식 (인)
제목	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6. 6. 1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6년형제 42529호	
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	
피의자명	전금식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명	직무유기	처분일자	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	김영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명	직무유기	처분일자	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	이광범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명	직무유기	처분일자	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	이상훈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명	직무유기	처분일자	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안 내			
<p>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.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나. 10일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증지처분된 경우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여기를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주소: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
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-741



받는사람

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
빌 105동 1504호

김명호 님

156-030

서울중앙지방검찰청			
우 137-741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		/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	
수신자	김명호	발신자	검사 신성식 (인)
제목	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6. 6. 1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6년형제 42529호	
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	
피의자명	이혁우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명	직무유기	처분일자	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	홍성무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명	직무유기	처분일자	2006.05.30
처분결과	각하		
피의자명		주민등록번호	
죄명		처분일자	
처분결과			
피의자명		주민등록번호	
죄명		처분일자	
처분결과			
안 내			
<p>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.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나. 10일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증지처분된 경우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고소·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

기 소	구 공 판	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징역형에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
	구 약 식	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처분
불기소	기 소 유 예	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검사가 정상(연령, 성행, 지능, 환경등)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
	혐 의 없 음	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, 증거불충분등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
	죄 가 안 됨	정당행위등 법률상 위법성이 없거나,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, 심신 상실자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
	공소권없음	공소시효완성, 피의자의 사망등 법률상 일정한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
	기 소 중 지	피의자의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
	참고인중지	참고인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
	각 하	고소(고발)인이 출석하지 않거나,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(고발)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
기 타	이 송	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결정할 필요성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
	소 년 보 호 사 건 송 치	피의자가 20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필요시에 소년사건처분 법원인 가정 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처분
	가 정 보 호 사 건 송 치	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필요시에 가정폭력사건처분 법원인 가정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처분
	기소중지·참고인중지 처분인 경우 향후 처분결과등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귀하의 주소변동시 그 변경된 주소를 사건과 민원실(☎530-4772~4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	